

소 장

원 고 1. 0①0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○②○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〈〉〈주식회사

00시 00구 00로 00(우편번호 000-000)

이사장 ���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20○○. ○. ○. 개최한 피고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소외 ◈◈◈를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주주들입니다.

- 2. 20○○. ○. 기최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소외 ●●●를 이사호 및 임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.
- 3. 그러나 위 결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관에 위배하고 있습니다. 즉, 피고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수를 5명 이내로 정하고 있었으며, 위 결의 당시 피고회사에 이미 이사 5명이 있었으므로 위 결의에 의하여 다시 1명의 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면 이사의 수는 6명이 되어 정관 소정의 수를 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.
- 4. 따라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소외 ●●●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정관

1. 갑 제2호증

법인등기사항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1. ○①○ (서명 또는 날인)

2. ○②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관할법원	본점소재지의 지방 법원(상법 제380조, 제186조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1)참조 ・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
기 타	·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,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함(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0다69927 판결).

※ (1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